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2011년 6월 pp.175~197
한국세무학회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충진** · 김유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용증대 세액공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효과는 0.662%에서 1.147%까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은 표본기업(5,040개 기업-연) 중에서 5.36% 밖에 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업별 평균 법인세 감소액은 약 1억원으로 신규 근로자 2~3명분의 연봉에 불과하여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지원하는 방안
- 둘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고용촉진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 셋째, 고용창출 세액공제금액 기준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 넷째, 복지정책과 연결된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방안
- 다섯째, 현행 고용유지 과세특례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어> 노동수요, 고용촉진, 세액공제

* 이 논문은 2010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이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2010.12.)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좋은 논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chjshim@konkuk.ac.kr, 02-2049-6049, 주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99yckim@hongik.ac.kr, 02-320-1708,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10년 12월 1차수정일 2011년 3월 2차수정일 2011년 4월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다시 하강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경제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보면 2000년도 4.2%에서 2008년도에는 0.0%, 2009년에는 (-)2.7%로 떨어졌다. 영국 또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국내 총생산(GDP)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은 4.0%에서 2008년도 2.3%, 2009년도는 0.2%로 낮아졌다.¹⁾ 경제가 불황기일 때 고용의 감소는 볼 보듯 뻔하다. 미국의 2000년도 실업율은 4.0%이었지만 2008년도는 5.8%, 2009년도는 9.3%로 증가되었고 일본의 실업율은 2000년도 4.7%에서 2008년도 4.0%, 2009년도 5.1%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업율은 2000년도 4.4%, 2008년도 3.2%, 2009년도 3.6%²⁾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지 않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각국은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0년 1월 29일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을 인상한 소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신규고용인원 1인당 5천불, 1기업당 한도액은 50만불, 총 세수 감소액은 10년간 약 330억불이라고 하였다.³⁾ 이러한 조치로 약 1백만 개의 소사업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시절 3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조세법 제30조의 4)가 2004년 7월에 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과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 여부의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대와 관련된 세제지원제도를 다소 변경된 제도로 다시 도입하고자 한다. 고용증대는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방법과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보다는 노동수요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수요 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국내 및 미국을 중심으로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 추가되는 이 연구의 의의는 현행 고용촉진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과세

1)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OECD.Stat Extracts(<http://stats.oecd.org>)에 근거함

2) 각국의 실업율은 OECD.Stat Extracts(<http://stats.oecd.org>)에 근거함

3) 주요국의 조세 동향, 동향 10-03/2010.2, 한국조세연구원

특례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두고자 한다.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한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향후 세법 개정시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I 장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술하며, III 장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V 장에서는 IV 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VI 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한다.

II. 선행연구

1. 고용촉진 관련 선행연구

송일호(2009)는 설비투자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의 기간별 구조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설비투자는 1-2년 후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설비투자시점에서는 고용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에 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만 고용증가율이 증가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충원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고용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외의 시설투자는 시차를 두고 고용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김선빈·장용성(2008)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소득세율의 2% 인상은 소득, 자본, 노동을 모두 감소시키며, 빈곤층의 노동공급 감소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세율의 2% 인상 후 취업률은 60%에서 58.8%로 감소하였으나, 늘어난 세수가 근로장려금으로 지불될 경우 고용은 62%로 증가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정책이 전체적으로 고용증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손광락·손수석·안병철(2006)의 연구에 의하면 직접세와 간접세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현재 조세구조는 균형예산의 제약조건 하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크게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할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소비세율의 인상은 법인세율의 인상과 달리 기업의 투자나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조세수입의 증대가 정

부의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경우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세는 고용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증대를 위해 법인세 등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에 해당되는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철인(2006)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의 한계선에 위치한 개인·가구에 대한 경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세제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인세와 고용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법인세를 1% 포인트 상승한 국가에서는 고용의 성장이 대략 0.6% 정도 감소되었다. 법인세의 인하는 소폭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였지만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국가의 경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손광락 등(2006)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며 법인세의 조정을 통한 고용창출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전병유 등(2005)의 연구는 기술변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변화가 노동비용과 자본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들과 노동시장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탄력성은 1.26~2.53 정도이며, 자본-노동 결합비율도 3.15~6.33로 높지 않다고 검증하였다.

Harden and Hoyt(2003)은 1980년부터 1994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감소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외 여러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43개의 주(state)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고용증가에 대해 음(-)의 유의성이 있었고 고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금의 배합은 판매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판매세와 개인소득세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법인세는 고용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효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고용유지와 관련된 과세특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KIS-VALUE에 수록된 유가증권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및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와 고용유지 관련 과세특례 제도의 실증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이 고용촉진을 위한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Ⅲ.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일반적으로 노동은 노동수요자가 노동공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제도

노동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 3)가 있다.

가. 고용증대 세액공제(2010.3.12.신설)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하는 상시근로자 수”라 한다)에는 초과하는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구(舊),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 구(舊),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와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차이점

구 분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	구(舊),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업	중소기업	모든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 유해업종 배제
적용기간	2010.3.1. - 2011.6.30.	2004.7.26. - 2005.12.31.
고용촉진 세액공제액	초과 상시근로자 수에 300만원	초과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
일자리 창출의 효과	?	28만 1천여명 ^(주)

주) 구(舊),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한국조세연구원(송헌재, 재정포럼 2010.4.) 자료를 인용함.

나.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 감소⁴⁾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100분의 0 이상 감소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이하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는 동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시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text{소득공제금액}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times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times 100\text{분의 } 50$$

2. 미국의 조세지원 제도

미국의 고용촉진 조세지원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의 고용촉진 조세지원 제도를 상세히 기술한다.

가. 과거 시행되었던 조세지원제도

(1) New Jobs Tax Credit(NJTC)

신규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NJTC)는 1977년 심각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rter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197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NJTC의 4가지 중요한 특징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NJTC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employers)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따라서 노동 공급곡선 보다는 노동 수요곡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기술자나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미숙련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세액공제액은 이전 연도 총임금의 105%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와 이전 연도 연방실업보험료의 기준소득(FUTA wage)의 102%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중 낮은 금액이다. 이러한 규정이 파트타임의 고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FUTA wage의 25%와 \$100,000 중 낮은 금액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에서는 매출액 이외에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든지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5) Perloff and Wachter(1979) 논문 pp.173-174 참조

셋째, 기업들은 증가되는 고용인원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보조금의 범위를 고려하여 신규고용 인원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단지 2년 동안 NJTC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NJTC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3% 이상 고용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2) Targeted Jobs Tax Credit(TJTC)

TJTC 프로그램은 1978년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는 특정 그룹(장애인, 재향군인,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청년층 등)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4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시행기간 동안 사업자들은 고용 첫해 동안 임금의 \$6,000 중 40%를 고용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근로자 1인당 \$2,400이며, 근로자는 최소 90일간 또는 120시간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91년 동안 \$374억의 행정비용과 세액공제가 있었으나, TJTC가 없었다면 고용되지 않았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혜택은 \$140억원으로 총비용 대비 \$1에 63%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TJTC 프로그램 수행 후에도 평균 근로자의 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이 높아지지는 않았다.⁶⁾

(3) Work Opportunity Tax Credit(WOTC)

WOTC는 TJTC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1996년 10월 1일 시행되었지만 1997년 9월 30일 폐지되었다. WOTC는 특정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시행기간 동안 사업자는 첫해 임금 \$6,000 중 35%(근로자 1인당 최대 \$2,100 한도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80일 근무 또는 400시간의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⁸⁾

WOTC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 대상자로는 주로 부양가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은 자, 퇴역군인, 최근 석방된 전과자, 특정 Empowerment Zone의 거주자로서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식권표(food stamps)를 받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추가적인 보장소득(SSI)의 수혜자 등이 해당된다.⁹⁾ 사업자는 성인 1인 신규고용에 \$2,400, 상이용사를 신규고용할 경우 1인당 \$4,000, 2년 이상 가족부양 수혜자를 장기간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9,000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The welfare-to-work tax credit, a joint economic committee report, March 1997.

7) 여름에 청년고용시(for summer youth employment) 최소 고용 기간은 20일 또는 120시간이다.

8) The welfare-to-work tax credit, a joint economic committee report, March 1997.

9) www.mass.gov 참조

(4) Welfare-to-Work Tax Credit(WWTC)

장기적인 복지수혜를 위해 WOTC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1998년 WWTC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¹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세액공제의 재정지출 규모는 \$287억이었다. 사업자는 최초 2년 동안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임금 중 \$10,000의 50%를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2년 동안 매년 최대 1인 근로자에 대해 \$5,000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적격임금에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교육비 보조금, 의료비 보조금 및 부양가족 보조금도 포함된다. 기존의 고용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세액공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WWTC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부족한 규정을 수정한 것이며, 이전의 고용촉진 제도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가) 세액공제 범위의 확대

업자들은 최초 2년 동안 매년 초기 임금 \$10,000 중 5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TJTC의 처음 1년 동안의 초기 임금 \$6,000 중 40%를 공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나) 적격임금의 확대

TJTC의 경우는 일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지급된 부분으로 한정하였지만, WWTC는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건강증진비, 부양가족비도 적격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 적격 대상자와 근무요건

장기적으로 복지 수혜를 받는 자와 그들의 가족이 적격 대상자이며 장기적 복지 수혜자는 최소 18개월 동안 복지수혜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반면 TJTC의 요구는 단지 90일 요건이다. 최소한의 근무기간이 확장되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일이 최소 90일 또는 120시간 근무 후에 TJTC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WOTC는 근무시간을 180일 또는 40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근무기간이 길 경우, 숙련공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현행 조세지원제도

(1) Enterprise Zones 프로그램

Enterprise Zones(기업촉진지구)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노후화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을 촉진하고자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미국의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어 주고 Enterprise Zones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감면해 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보장 프로그램보다 개인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했고 Ronald Reagan 행정부의 지지를 받아 도시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주 정부들은 최소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지역에서 Enterprise Zone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비록 불경기의 회

10) The welfare-to-work tax credit, a joint economic committee report, March 1997.

복에 대단한 처방은 아니지만 각 주(state)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경제가 낙후된 특정 지역(Empowerment Zone)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자는 Clinton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미 의회는 1993년에 동 제안을 입법화했다. Enterprise Zones 프로그램은 1982년 코네티컷 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40개 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시행하는 세제혜택¹¹⁾ 역시 법인세 세액공제, 재산세 면제, 판매세 면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Colorado주의 사례를 보면, 해당 도시 및 시골지역의 Enterprise Zone 관련 법령은 1986년에 규정되었으며 16개의 지역을 Enterprise Zone으로 지정하고 있다. Enterprise Zone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구 요건은 도시지역에서는 80,000명, 시골지역에서는 100,0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Colorado주는 Enterprise Zone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¹²⁾, 직업훈련세액공제¹³⁾, 신규 사업설비투자세액공제¹⁴⁾, 연구개발비 증가 세액공제¹⁵⁾,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세액공제¹⁶⁾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¹⁷⁾

(2)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제도

2010년 3월 18일 입법된 고용촉진(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 HIRE)법안¹⁸⁾에 의하면 실업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¹⁹⁾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부담금이 면제되고 추가로 52주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근로자 1인당 \$1,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180억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사회보장세의 부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 사회보장세 부담금 면제

2010년 2월 3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실업자를 고용하면 2010년 3월 19일부터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의 사업자부담금 6.2%를 면제한다.²⁰⁾ 이러한 제도는 영국의 임시단기고용보상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사업자의 부담이 면제되어도 근로자의 미래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면제받는 사회보장세 부분 만큼 사내

11) 각 주별 세제혜택은 재정포럼 2010.4 p.46을 참조

12) C.R.S. (Colorado Revised Statutes) §39-30-104

13) C.R.S. §39-30-104(4)

14) C.R.S. §39-30-105

15) C.R.S. §39-30-105.5

16) C.R.S. §39-30-105.6

17) 자세한 공제율 등은 Colorado Enterprise Zone Program을 참조

18) PUBLIC LAW 111-147

19) www.irs.gov/newsroom/article

20) IRC §38

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

(나) 추가 세액공제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신규 고용 1인당 \$1,000까지 일반 세액공제²¹⁾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세의 면제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 요건

신규 고용자는 고용되기 전 최소 60일 간의 실업상태에 있거나 60일 기간 동안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자만이 해당된다. 근로자는 최소 52주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대상 기업

일반사업자, 농장 사업자, 비영리단체, 공공대학(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사(家事)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Household employers)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IV.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 효과의 실증적 분석

1. 미국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

미국의 경우 민주당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 2009.10.20.)의 보고서에서 발표된 Daniel Hameresh(1993)의 연구에 의하면 10%의 노동비용의 감소는 3%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국가소득생산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자료에 의하면 임금은 노동보상비용 중에서 평균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금, 사회보장비용 및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된다. 임금의 15%가 고용창출세액공제라면 총 노동비용 중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5%가 된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0.30이면, 고용은 $3.74\%(12.45\% \times 0.30)$ 만큼 증가된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2010년의 임금이 2009년의 임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이 38.5%로 예측될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의 효과는 $2.3\%[3.74\% \times (1 - 0.385)]$ 로 예측하였다. 즉, 고용창출 세액공제의 효과는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그리고 고용창출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2. 우리나라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의 실증적 분석

가. 측정방법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

21) IRC §38

(EPI)의 보고서에 사용된 것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임금의 실질부담의 감소효과 비율, 노동수요 탄력성,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여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임금의 실질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임금의 실질부담의 감소효과 비율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임금의 실질부담의 감소효과 비율은 고용창출 1인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300만원을 연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 평균임금은 산업별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2008년도 연 평균임금은 $3,492\text{만원}(291\text{만원}^{22}) \times 12\text{달}$ 이다.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매년 전년대비 약 3% 정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도 연 평균임금은 $3,597\text{만원}(3,492\text{만원} \times 1.03)$, 2010년도 연 평균임금은 $3,705\text{만원}(3,492\text{만원} \times 1.03^2)$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2010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임금의 실질부담의 감소효과 비율은 $8.09\%(300\text{만원}/3,705\text{만원})$ 이다.

(2) 노동수요의 탄력성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전병유 등(2005)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하고자 한다. 전병유 등(2005)의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수요는 요소상대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요소는 자본과 노동 두 투입요소만 고려하고 있으며, 자본과 관련된 자본비용은 시장이자율을 이용한다. 이 때 시장이자율은 회사채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즉, 회사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자본비용을 측정할 경우 임금이 10%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2.53% 하락하며 국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자본비용을 측정할 경우 임금이 10%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1.46% 하락한다.

〈표 2〉 시장이자율에 따른 노동수요의 탄력성

구 분	회사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
노동수요의 탄력성	-0.253	-0.146

주) 전병유 등(2005)은 노동수요함수 추정에 흔히 사용되는 비용함수로 일반화된 레온티에프(generalized Leontief : GL) 비용함수를 이용하였고 요소수요함수는 Shepard's lemma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요소수요는 자본과 노동 두 투입요소만을 고려하여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22)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에서 공시하고 있는 산업별 월평균임금을 참조함

(3)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 추세

과거의 기업 자료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보다 많아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 추세는 <표 3>과 같다. 최근 5년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비율은 56.05%이다.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 추세를 산출하기 위해 표본대상 기업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12월 결산법인인면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둘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비상장 외부감사대상기업에 해당된다. KIS-VALUE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셋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자 수가 KIS-VALUE에 있어야 한다. KIS-VALUE상의 근로자 수는 대표이사,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의미한다.

〈표 3〉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 추세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합 계
① 전체 중소기업 수	1008	1008	1008	1008	1008	5040
②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된 중소기업 수	580	595	593	541	516	2825
③ 증가추세(②/③)	57.54%	59.03%	58.83%	53.67%	51.19%	56.05%

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의 실증적 분석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의 실증적 분석은 위에서 기술한 측정방법대로 한다. 위에서 측정한 대로 일정기간 그 추세가 유지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의 분석

구 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에 따른 임금부담 의 감소효과 비율	② 노동수요의 탄력성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기업의 비율	④ 고용증대 세액 공제효과 추정 (①×②×③)
Panel A : 자본비용을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8.09%	-0.253	56.05%	1.147%
Panel B : 자본비용을 국제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8.09%	-0.146	56.05%	0.662%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를 측정할 때 임금이 노동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기업들이 계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수요의 탄력성 산정시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이 노동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로 간주한다. 분석의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의 추정치는 0.662%에서 1.147%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미국보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낮는데 그 주원인이 있으며, 향후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3.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효과의 실증적 분석

고용유지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10% 감소요건, 고용유지 요건 및 임금의 감소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효과분석을 위해 표본기업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둘째, 검증기간(2005년~2009년) 동안 KIS-VALUE에 재무적 자료가 있는 중소기업

셋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 다만, 관리대상 종목은 제외한다.

넷째, 비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인 중소기업

〈표 5〉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 수

연 도	전체 중소기업 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기업 전체 기업수
2005년~2009년도 전체 기업수 (기업-연)	5,040	1,005	3,175	860
① 매출액기준 충족기업	1,117	214	710	193
②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기업	2,825	479	1,848	498
③ 1인당 연간 임금기준 충족기업	1,803	353	1,141	309
④ 요건 모두 충족기업(①×②×③)	268	55	164	49

주)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Ⅲ장을 참조함

<표 5>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1,117개 기업-연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100분의 0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2,825개 기업-연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1인당 연간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중소기업은 1,803개 기업-연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검증기간 동안 268개 기업-연으로 전체 표본기업 중에서 약 5.32%로 그 비중이 낮다. 실질적으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수가 낮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의 재무적 자료를 통해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그 과세특례 효과를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 수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38개 기업에서 78개 기업이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연 평균적으로 볼 때 약 54개 기업이며 5.36%로 낮다. 연도별 중위수 값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 감소액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별로 약 1억원 정도가 된다. 연간 1억 원정도는 근로자 2~3명 정도 밖에 충원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므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표 6>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법인세부담액 감소 분석 결과

(단위 : 원)

연 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업수 ^{주1)} (비중)	기업의 소득공제금액 ^{주2)}	한계세율(지방소득 세 소득분 포함) ^{주3)}	기업별 평균 법인세 부담 감소액
2005년도	49 (4.86%)	380,901,865	27.5%	104,748,012
2006년도	47 (4.66%)	217,780,643	27.5%	59,889,676
2007년도	56 (5.56%)	500,767,234	27.5%	137,710,989
2008년도	38 (3.77%)	390,335,701	27.5%	107,342,317
2009년도	78 (7.74%)	447,908,108	24.2%	108,393,762
연간 평균	54 (5.36%)	387,538,710	—	103,616,951
연간 전체 중소기업	1,008 (100%)	—	—	—

주1) 해당 기업 수는 KIS-VALUE를 통해서 추출한 것이며, 표본 기업 중에서 고용유지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수를 말함

주2) 기업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기업 중에서 중위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득공제금액이며, 기업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위수 값을 사용함

$$\text{기업별 소득공제금액}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times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times 100\text{분의 } 50$$

주3) 연도별 한계세율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고용촉진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의 시사점

우리나라가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와 관련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앞에서 두 제도의 효과를 KIS-VALUE에 있는 기업의 자

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상태에서 기업이 고용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비율이 약 56.05%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의 실효성은 약 1%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약 5%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V.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IV장에서 제시된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동수요측면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적용대상 법인의 확대방안

노동수요의 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와 관련된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 외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고용촉진을 유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고용유지와 관련된 요건을 대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기업 중 몇 개의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7〉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대기업에 적용할 경우 해당기업 수 분석 결과

연 도	전체 대기업 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기업 수
2005년~2009년도 전체 대기업 수 (기업-연)	2,720	1,705	585	430
① 매출액기준 충족기업	301	183	76	42
②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기업	1,506	886	358	262
③ 1인당 연간 임금기준 충족기업	858	509	197	152
④ 요건 모두 충족기업(①×②×③)	46	27	13	6

주) 고용유지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III장을 참조함

대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매출액의 규모가 전년 대비하여 당해 연도에 감소하는 경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표 7>에서 보듯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10%이상 하락한 기업 수는 301개 기업-연,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수는 1,506개 기업-연이고 1인당 연간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수는 858개 기업-연이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46개 기업-연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비상장 외부감사대상기업도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 해당 기업 수가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까지 고용유지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해도 재정지출에 따른 비용의 증가보다는 고용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도 될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표 8>에서 보듯이 비영리법인 당 총 부담세액은 2007년도 1억 2,700만원, 2008년도 1억 6,900만원, 2009년도 1억 5,900만원으로 높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신규 근로자가 채용될 경우 고용 촉진 및 유지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촉진할 유인이 발생된다.

<표 8> 비영리법인 총 부담세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비영리법인 수	총 부담세액	비영리법인 당 총 부담세액
2007년도	7,100	900,206	127
2008년도	7,627	1,285,863	169
2009년도	7,252	1,155,174	159

주)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2.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단기 고용촉진지원제도의 신설방안

<표 9>에서 보듯이 기업들의 장기고용 비율은 증가되지 않고 있다. 단기고용은 2005년도 656만 6천명에서, 2009년도 721만 6천명으로 증가하고, 장기고용은 2005년도 2,993만 7천명에서 2009년도 3,295만 8천명으로 증가되었지만, 고용비율을 보면 2005년도 82%에서 2009년도 82%로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기업이 장기고용에 대한 부담으로 전년도에 비해 장기고용을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만 고용촉진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고용이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단기 고용촉진세액공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노동수요의 유연성과 기업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고용에 대한 지원정책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표 9〉 장·단기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단기고용	6,566	6,694	6,955	6,654	7,216
비 율(%)	(18.0)	(17.9)	(18.0)	(17.1)	(18.0)
장기고용	29,937	30,702	31,765	32,207	32,958
비 율(%)	(82.0)	(82.1)	(82.0)	(82.9)	(82.0)
합 계	36,503	37,396	38,720	38,861	40,174
비 율(%)	(100)	(100)	(100)	(100)	(100)

주1) 출처 : 통계청(<http://kosis.kr>) 자료를 재분류하여 작성한 것임.

주2) 각 연도별 8월 현재 기준임

주3) 단기고용의 범위 : 통계자료 중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한 것임

주4) 장기고용의 범위 : 통계자료 중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것임

3.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금액의 확대방안

세액공제는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혜택이 사업자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만큼 유인이 있어야 한다. 즉, 노동수요의 한계효익이 노동수요의 한계비용 보다 커야 한다. 만약 신규 고용 1인의 한계효익이 100원이고 한계비용이 110원이라면,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최소 10원 이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할 때 아무리 정부가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해도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현재의 고용촉진관련 세액공제의 규모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용촉진을 위해 과거에 적용한 미국의 근로복지세액공제(Welfare-to-Work Tax Credit) 제도를 보면, 사업자는 최초 2년 동안 1인 근로자에 대해 최대 \$5,000을 세액공제로 지원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고용촉진세액공제 금액 3백만원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세액공제금액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 1인 근로자 신규고용에 대해 현재의 두 배인 6백만원은 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4.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고용촉진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가능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취업을 앞둔 청년 등 일반적인 사람은 높은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고용창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용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재정지출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부

는 어느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 및 사회측면에서 불 유리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표 10>에서 보듯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5년도 0.306에서 2009년도 0.320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아 취약계층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할 명분을 제공해 준다. 5분위배율은 2005년도 5.53에서 2009년도 6.14로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빈곤율 또한 2005년도 14.7에서 2009년도 15.4로 높아지고 있다. 앞의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취약계층에 있는 자와 그 가족들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의 근로자 요건을 특정 취약계층²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10〉 소득분배지표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지니계수	0.306	0.312	0.321	0.323	0.320
5분위배율	5.53	5.74	6.05	6.16	6.14
상대적빈곤율	14.7	14.8	15.5	15	15.4

주1) 자료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대상은 전국이며, 2인 이상 비농가를 대상으로 함.

주2) 분배지표 산출시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함.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되므로 분석에서는 시장소득으로 측정된 것을 사용함

주3) 지니계수 : 전체가구(인구)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임

주4) 5분위배율 :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값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주5) 상대적 빈곤율 :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임

5. 고용유지 과세특례제도의 악용 방지 방안

현행 중소기업 고용유지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임금 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고용의 변화가 없어도 전년도 총임금 보다 당기 총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고용유지와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의 전년대비 감소 기준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연봉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고용유지 관련 과세특례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연봉제에 의하여 임금이 고의적으로 연도별로 증감할 경우 특례규정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2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사회적 기업육성법령 제2조 제1항, 제2항)

6. 복지정책과 연결된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 방안

복지정책과 연결된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을 일정 인원이상, 일정기간 동안 고용할 때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05년도 1.55%, 2006년도 1.37%, 2007년도 1.54%로 2%의 법정 고용의무 비율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보다 민간기업의 경우 확연히 장애인 고용수가 고용의무인원 수보다 낮다. 민간기업의 경우 각 년도별 사업주 당 고용인원 수는 2.97명(51,481명/17,279사업주), 3.35명, 3.51명이다. 따라서 최소 한 기업에서 5인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고용의무인원 이상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11〉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대상기관별		총 계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2005년	대상사업주 (개)	17,500	86	135	17,279
	적용대상인원 (명)	4,000,662	305,067	141,833	3,553,762
	고용의무인원 (명)	71,875	6,147	2,776	62,952
	장애인수 (명)	61,862	6,853	3,528	51,481
	고용률 (%)	1.55	2.25	2.49	1.45
2006년	대상사업주 (개)	19,155	87	136	18,932
	적용대상인원 (명)	5,801,788	812,656	177,762	4,811,370
	고용의무인원 (명)	107,369	16,292	3,484	87,593
	장애인수 (명)	79,480	12,219	3,839	63,422
	고용률 (%)	1.37	1.50	2.16	1.32
2007년	대상사업주 (개)	20,462	87	250	20,125
	적용대상인원 (명)	5,807,665	822,590	288,331	4,696,744
	고용의무인원 (명)	107,012	16,497	5,643	84,872
	장애인수 (명)	89,546	13,142	5,650	70,754
	고용률 (%)	1.54	1.60	1.96	1.51

주1)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현재 2007년도까지만 자료가 공시되어 있음

주2) 고용의무인원 : 의무고용대상 각 사업장의 법정 고용의무인원(적용대상근로자 × 법정장애인의무고용률 2%, 민간부문의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주3) 대상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 : 정부기관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에 의거 장애인고용의무가 있음

주4) 적용대상인원 :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및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반영한 근로자

7.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대원칙 간의 조화문제

위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 방안들이 고용촉진을 위한 광범위성(Wide-ranging), 일시성(Temporary), 규모성(Large) 및 효율성(Efficient)의 대원칙²⁴⁾에 어긋나지를 않으므로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그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VI.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국내 및 미국을 중심으로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의 실증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임금부담의 감소효과 비율은 8.09%이다. 즉, 연 평균임금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9%였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회사채 수익률이나 국채 수익률을 시장이자율로 간주할 경우 -0.253에서 -0.146까지이다. 즉, 임금이 10% 높아질 경우 고용은 1.46%에서 2.53%까지 낮아진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56.05%였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는 0.662%에서 1.147%로 낮게 나타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기업은 매출액기준 충족,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및 1인당 연간 임금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표본검증기간(2005년~2009년) 동안 268개(기업-연)이다. 이는 전체 표본기업 수(5,040개 기업-연)에서 5.36%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기업의 법인세 감소액은 기업당 약 1억원으로, 그 효과금액이 신규 근로자 2~3명분의 연봉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24) EPI(Economic Policies Institute 2009.10.20. p.2)에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Wide-ranging은 현재의 이윤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Temporary는 고용촉진 제도를 일정기간 동안만 도입하는 것이다. Large는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정도로 충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Efficient는 고용촉진 조세지원 제도가 기업에 제시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업이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성과 신규 고용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고용에 대한 지원정책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 때 단기 고용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용촉진을 위해 세액공제금액을 현행 신규 고용 1인당 3백만원에서 최소 두 배에 해당 되는 6백만원으로 증가시켜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촉진과 관련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임금 피크제도 및 연봉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복지정책과 연결된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과정에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직접 측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분석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측정상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지만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갑자기 변동되지는 않으므로 연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추정상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과까지 검증되는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선빈 · 장용성. 2008. “조세 ·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30권 제2호(통권 제103호)
- 변양규. 2008.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손광락 · 손수석 · 안병철. 2006.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27 - 45
- 송일호. 2009. “설비투자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생산성논집 제23권 제3호
- 송헌재. 2010.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 이철인. 2006.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3호
- 전병유 · 남재량 · 신동균 · 최강식 · 이일영 · 조준모. 2005. “한국의 노동수요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 06
- 한국조세연구원. 2010. “주요국의 조세동향”. 1월
- _____. 2010. “주요국의 조세동향”. 2월
- _____. 2010.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 3월
- _____. 2010.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_____. 2010.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의 역할”
- Bartik, Timothy and John Bishop. 2009. "Complementing recovery policies with a jobs creation tax credit". *Economic Policy Institute* 2009
- _____. 2009. "The job creation tax credit". *Economic Policy Institute* 2009
- Harden, William and William H Hoyt. 2003. "Do States Choose Their Mix of Taxes to Minimize Employment Losses?". *National Tax Journal* Mar 2003 ; 56, 1
- Perloff, Jeffrey and Michael L. Wachter. 1979. "The New Jobs Tax Credit : An Evaluation of the 1977 - 78 Wage Subsidy Program". The American Economic
- Jim Sxtion Chairman. 1997. The Welfare - to - Work Tx Credit. A Joint Economic Committee Report. March 1997.
- www.IMF.org, World Economic Outlook, Review, Vol.69, No.2 : 173 - 179
- www.mass.gov
- www.rev.gov.on.ca/en/credit/cetc
- www.irs.gov
- www.moel.go.kr

Tax Incentives for Employment Promotion

Chung-Jin Shim^{*} · Yu-Chan Kim^{**}

—〈Abstract〉—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se domestic and foreign tax incen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labour demand and its effect on employment and to suggest reform direction for the incentive system.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ffect of tax credit on employment promotion in Korea is estimated from 0.662% to 1.147%, because of low elasticity of labour demand. Firms of tax incentives are just 5.36% of examination samples and we find that the average tax credit amount is about 1 hundred million Won. It is just Salaries for 2 or 3 employee.

As a reform direction of tax incentives for employment promotion we suggest as follows :

At first, we suggest to apply this rule not only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but also for large and non-profit enterprises.

Secondly, it is also desirable to induce tax favourable system for temporarily employment promotion.

Thirdly, we suggest to increase the limit for tax credit for employment from 3 Mill. Won to 6 Mill. Won per head.

Fourthly, we suggest to induce employment promotion linked to Social Welfare System.

At last, we suggest a anti-abuse clause of tax credit on employment promotion.

〈Key words〉 Labour Demand, Employment Promotion, Tax Credit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Hongik University